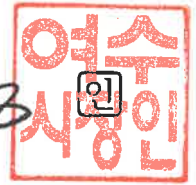


제25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1 월 13 일

여 수 시 장 김기남



여수시 조례 제2255호

붙임 여수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255호

여수시 상수도 원인가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상수도 원인가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를 말한다.
 -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
 - 나. 제5조 제1항 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구 분	금 액
단위사업비(m ³ /일)	1,999,000원

단, 원인자부담금과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 총사업비라 함은 대규모개발사업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배수지, 가압시설, 관로 등을 위한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2.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부금 누계액)-시설부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으로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구 분	금 액
단위사업비(m ³ /일)	381,000원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건축물 등에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4.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이외의 소규모 사용자 구경별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구경(mm)	부과금액	비 고
13	250,000원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	500,000원	
25	850,000원	
32	1,400,000원	
40	2,500,000원	
50	4,300,000원	
80	8,600,000원	
100	14,000,000원	
150	32,000,000원	
200	50,000,000원	
250	71,000,000원	